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1
----------	---

제출연월일 2006. 1. 11.

제출자 사천시장

2005. 12. 29일 사천시의회로 부터 이송되어 온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조례안 제4조 제1항중 “우리 수산물” 을 사용할 경우에도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WTO/농업협정을 위배될 여지가 있고
2.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현금지원은 정부조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WTO/GATT 제3조(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3. 조례안 제4조 제1항중 “우리 농·수·축산물 ” 을 사용할 경우에만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향후 국·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덧붙임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관련 국·소장 및 담당관 5인이내
2. 사천시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시의회 의원 1인
4. 영양사 단체 대표자 1인
5. 학부모 단체 대표자 2인
6. 교사 단체 대표자 2인
7.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자 각 1인
8.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2인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 목적에 따라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장은 식품비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이 제8조의 정산서 제출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지사 개선·권고사항

(경남도 법무담당관 - 103(2006. 1. 5))

□ 조례명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 내용

-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조례안 제4조제1항)
- 이를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조례안 제4조제2항)

□ 검토결과

- 정부에서는 지난 2003.12.30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WTO/GATT) 제3조에서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농업에 관한 협정제6조에서 회원국은 특정연도에 현행보조 총액측정치 합계에 따라 표시된 농업생산자를 위한 보조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당해 연간 또는 최종 양허약속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나라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아울러 2004. 6.29.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중앙관계부처회의를 개최, “학교급식조례 제정과정의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공문【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167호(2004. 7.27), 및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849호(2004. 8. 5)】에 의하면,
 - 기초자치단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이 아니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달인 경우 WTO/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WTO 농업협정과 관련하여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약 33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가 허용되며, 수산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러한 규정은 지원대상자가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WTO/농업협정과 위배될 여지가 있음.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조달 협정은 양허대상이 아니나 현금 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조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WTO/GATT제3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2005. 11. 4. 외교통상부에서도 질의 회신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급식학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WTO/GATT제3조 내국민 대우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 아울러 식재료 구입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이 없이 막연히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TO 농업협정에서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약 33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가 허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원의 경우 본 농업협정에 위배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WTO/GATT 제3조** 및 **WTO/농업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임.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第19條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 ①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붙여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⑧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5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하여 助言 또는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市·道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財政支援 또는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